인천계양지구 A6블록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및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일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내 A6블록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63세대 (전용면적 59㎡ 529세대, 69㎡ 5세대, 74㎡ 69세대, 77㎡ 18세대, 84㎡ 42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 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 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1인 및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며**(사전청약 당첨자 및 기관추천 확정대상자 등은 불가),** 이 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31(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414**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타입)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각 주택형(타입)별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한 주택형(타입)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6.09.13.(일)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인천계양지구 A6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09.12.(토) (10:00~17:00) 사전공개합니다.**
-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인천계양 A6블록 59A, 59E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59B, 74, P77A, 84B)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대 상	구 분	관람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일반고객 관람 불가)	'26.09.12(토) (10:00~17:0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 기간 내 주말, 공휴일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공간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문의 : ☎ 032-562-4777)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26.09.13.(일) ~ 09.16(수)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GY-center6.co.kr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GY-center6.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6.09.09. 10:00 오픈 예정)

■ 본 단지에 'ANDANTE' 단독 또는 'ANDANTE+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 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현장)	선택품목 결정	계 약	
	사전청약 당첨자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전자	현장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주택형(타입) 배정결과 발표	본청약 신청 포기							
8.31 (월)	9.17(목) 10:00 ~9.18(금) 17:00	09.23 (수) (14:00)	9.28 (월) 10:00 ~9.29 (화) 17:00	9.30 (수) (10:00~17:00)	10.1 (목) 10:00 ~ 10.2 (금) 17:00	10.21 (수) (17:00)	10.28(수) ~ 11.1(일) (10:00~16:00)	12.10(목) 10:00 ~ 12.11(금) 16:00	12.15(화) ~12.16(수) (10:00~16:00)	12.17(목) ~12.18(금)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주택전시관 (오정동64-5)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주택전시관 (오정동64-5)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 **(접수일정)** 공급유형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공급유형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 **(인터넷청약)**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거나 간편인증 13종으로 로그인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 전용관)**

■ **(청약통장)**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8.30.)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신청 가능)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하는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청약신청 불가(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및 기타지역 거주자 모두 인정하지 않음)
(2)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국외에 체류중이나, 그 체류기간이 연속 90일 이하인 경우 청약신청 가능
(3)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8.30.)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인 경우 청약신청 가능(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
(4)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
(5)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단독세대주 또는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해당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25조, 제34조에 의거 **지역우선 공급기준(13페이지)에 따라 지역별 물량을 배정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아래 참고)

■ **신청자격별 검증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Ⅱ.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및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지역균형발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순위자)	추첨공급
무주택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여부, 부적격당첨제한 등	세대구성원 * 지역균형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세대주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과거 주택소유이력	세대구성원 (사전청약 공고일부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입주자저축	해당 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지역균형발전 등 불필요	해당없음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1순위자]** 신청자 본인 (12개월, 12회이상) **[2순위자]** 신청자 본인(가입자)
소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맞벌이 200%)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자산 (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45,420천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제64조,「주택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별표3
거주의무	-	없음	「주택법」제57조의2,「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되어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발표일 현재 재당첨제한기간 내 있는 당첨자 및 그 세대(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13페이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참고)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확인(세대원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특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신생아·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나 입양 포함)가 있는 분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1세대 1주택 기준)하여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신청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함) 청약 신청 가능하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당첨된 경우 계약 체결 시 기존 소유 주택(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으로서 분양권등을 포함)의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 :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각호(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할 것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혼인특례 및 출산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므로, 청약 신청 전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청약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 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제37조에 따른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신청이 배정 물량을 초과하여 경쟁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6.12.15(화)~2026.12.16(수) 10:00~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or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착순 수의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Ⅰ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인천계양 A6블록 : 공공분양주택 최고층 기준 7~15층 12개동 전용면적 85㎡ 이하 663세대 (사전청약412세대, 이주자주택 2세대, 특별공급 211세대, 일반공급 38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대지면적(㎡)	공급세대수													최고층수	1층세대수	입주예정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계)		계	사전청약당첨자	이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국가유공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소유자	지역균형발전	기관추천				
합 계									663	412	2	24	24	37	12	49	12	5	2	24	22	38	15	37	
A6	059.8400A	59A	59.8400	21.8232	12.0444	44.8618	138.5694	46.9404	384	281	–	10	10	15	5	21	5	2	1	10	11	13	15	23	’29. 06
	059.8100B	59B	59.8100	21.8123	12.0384	44.8393	138.5000	46.9169	52	–	–	5	5	8	3	10	3	1	–	5	4	8	15	2	
	059.8300C	59C	59.8300	21.8196	12.0424	44.8543	138.5463	46.9326	15	15	–	–	–	–	–	–	–	–	–	–	–	–	15	1	
	059.7100D	59D	59.7100	21.7758	12.0182	44.7643	138.2683	46.8384	10	6	–	–	–	–	–	1	–	–	–	–	–	3	5	2	
	059.7200E	59E	59.7200	21.7795	12.0202	44.7718	138.2915	46.8462	52	19	–	3	3	5	2	7	2	1	–	3	4	3	14	4	
	059.9700G	59G	59.9700	21.8706	12.0706	44.9592	138.8704	47.0424	6	–	1	1	1	1	–	1	–	–	–	1	–	–	7	–	
	059.8200H	59H	59.8200	21.8159	12.0404	44.8468	138.5231	46.9247	10	9	–	–	–	–	–	–	–	–	–	–	–	1	5	2	
	069.8200P	P69	69.8200	25.4629	14.0532	52.3437	161.6798	54.7691	5	3	–	–	–	–	–	–	–	–	–	–	–	2	11	–	
	074.9300O	74	74.9300	27.3264	15.0817	56.1747	173.5128	58.7775	69	37	–	3	3	5	2	6	2	1	–	3	3	4	15	3	
	077.4100A	P77A	77.4100	28.2309	15.5809	58.0339	179.2557	60.7229	16	11	–	–	–	1	–	1	–	–	–	–	–	3	9	–	
	077.4100C	P77C	77.4100	28.2309	15.5809	58.0339	179.2557	60.7229	2	2	–	–	–	–	–	–	–	–	–	–	–	–	9	–	
	084.7800A	84A	84.7800	30.9187	17.0643	63.5592	196.3222	66.5042	26	18	1	1	1	1	–	1	–	–	1	1	–	1	15	–	
	084.9900B	84B	84.9900	30.9953	17.1065	63.7166	196.8084	66.6689	16	11	–	1	1	1	–	1	–	–	–	1	–	–	14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모형, 팸플랫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시 청약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 완료하여야 합니다.**(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59C 사전청약자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건설호수, 평형별 종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 59C와 유사평면인 59E 중 주택형(타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부 신청방법은 19페이지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2. 사전청약 당첨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공급 세대중 P69, P77A, P77C 세대는 1세대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9년 06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및 납부 일정

■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059.8400A (59A)	1층	기본형	505,110	50,511	50,511	50,511	50,511	50,511	50,511	50,511	96,533	55,000
		마이너스옵션	473,922	47,392	47,392	47,392	47,392	47,392	47,392	47,392	87,178	55,000
	2층	기본형	510,490	51,049	51,049	51,049	51,049	51,049	51,049	51,049	98,147	55,000
		마이너스옵션	479,302	47,930	47,930	47,930	47,930	47,930	47,930	47,930	88,792	55,000
	3층	기본형	521,230	52,123	52,123	52,123	52,123	52,123	52,123	52,123	101,369	55,000
		마이너스옵션	490,042	49,004	49,004	49,004	49,004	49,004	49,004	49,004	92,014	55,000
	4층	기본형	531,980	53,198	53,198	53,198	53,198	53,198	53,198	53,198	104,594	55,000
		마이너스옵션	500,792	50,079	50,079	50,079	50,079	50,079	50,079	50,079	95,239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537,360	53,736	53,736	53,736	53,736	53,736	53,736	53,736	106,208	55,000
		마이너스옵션	506,172	50,617	50,617	50,617	50,617	50,617	50,617	50,617	96,853	55,000
059.8100B (59B)	1층	기본형	494,960	49,496	49,496	49,496	49,496	49,496	49,496	49,496	93,488	55,000
		마이너스옵션	465,710	46,571	46,571	46,571	46,571	46,571	46,571	46,571	84,713	55,000
	2층	기본형	500,230	50,023	50,023	50,023	50,023	50,023	50,023	50,023	95,069	55,000
		마이너스옵션	470,980	47,098	47,098	47,098	47,098	47,098	47,098	47,098	86,294	55,000
	3층	기본형	510,760	51,076	51,076	51,076	51,076	51,076	51,076	51,076	98,228	55,000
		마이너스옵션	481,510	48,151	48,151	48,151	48,151	48,151	48,151	48,151	89,453	55,000
	4층	기본형	521,290	52,129	52,129	52,129	52,129	52,129	52,129	52,129	101,387	55,000
		마이너스옵션	492,040	49,204	49,204	49,204	49,204	49,204	49,204	49,204	92,612	55,000
	5층~최상층	기본형	526,560	52,656	52,656	52,656	52,656	52,656	52,656	52,656	102,968	55,000
		마이너스옵션	497,310	49,731	49,731	49,731	49,731	49,731	49,731	49,731	94,193	55,000

주택형 (타입)	층별	구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059.8300C (59C)	1층	기본형	484,830	48,483	48,483	48,483	48,483	48,483	48,483	48,483	90,449	55,000
		마이너스옵션	455,570	45,557	45,557	45,557	45,557	45,557	45,557	45,557	81,671	55,000
	2층	기본형	489,990	48,999	48,999	48,999	48,999	48,999	48,999	48,999	91,997	55,000
		마이너스옵션	460,730	46,073	46,073	46,073	46,073	46,073	46,073	46,073	83,219	55,000
	3층	기본형	500,300	50,030	50,030	50,030	50,030	50,030	50,030	50,030	95,090	55,000
		마이너스옵션	471,040	47,104	47,104	47,104	47,104	47,104	47,104	47,104	86,312	55,000
	4층	기본형	510,620	51,062	51,062	51,062	51,062	51,062	51,062	51,062	98,186	55,000
		마이너스옵션	481,360	48,136	48,136	48,136	48,136	48,136	48,136	48,136	89,408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515,780	51,578	51,578	51,578	51,578	51,578	51,578	51,578	99,734	55,000
		마이너스옵션	486,520	48,652	48,652	48,652	48,652	48,652	48,652	48,652	90,956	55,000
059.7100D (59D)	1층	기본형	474,380	47,438	47,438	47,438	47,438	47,438	47,438	47,438	87,314	55,000
		마이너스옵션	445,179	44,518	44,518	44,518	44,518	44,518	44,518	44,518	78,553	55,000
	2층	기본형	479,420	47,942	47,942	47,942	47,942	47,942	47,942	47,942	88,826	55,000
		마이너스옵션	450,219	45,022	45,022	45,022	45,022	45,022	45,022	45,022	80,065	55,000
	3층	기본형	489,520	48,952	48,952	48,952	48,952	48,952	48,952	48,952	91,856	55,000
		마이너스옵션	460,319	46,032	46,032	46,032	46,032	46,032	46,032	46,032	83,095	55,000
	4층	기본형	499,610	49,961	49,961	49,961	49,961	49,961	49,961	49,961	94,883	55,000
		마이너스옵션	470,409	47,041	47,041	47,041	47,041	47,041	47,041	47,041	86,122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504,660	50,466	50,466	50,466	50,466	50,466	50,466	50,466	96,398	55,000
		마이너스옵션	475,459	47,546	47,546	47,546	47,546	47,546	47,546	47,546	87,637	55,000
059.7200E (59E)	1층	기본형	474,450	47,445	47,445	47,445	47,445	47,445	47,445	47,445	87,335	55,000
		마이너스옵션	445,244	44,524	44,524	44,524	44,524	44,524	44,524	44,524	78,576	55,000
	2층	기본형	479,500	47,950	47,950	47,950	47,950	47,950	47,950	47,950	88,850	55,000
		마이너스옵션	450,294	45,029	45,029	45,029	45,029	45,029	45,029	45,029	80,091	55,000
	3층	기본형	489,590	48,959	48,959	48,959	48,959	48,959	48,959	48,959	91,877	55,000
		마이너스옵션	460,384	46,038	46,038	46,038	46,038	46,038	46,038	46,038	83,118	55,000
	4층	기본형	499,690	49,969	49,969	49,969	49,969	49,969	49,969	49,969	94,907	55,000
		마이너스옵션	470,484	47,048	47,048	47,048	47,048	47,048	47,048	47,048	86,148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504,740	50,474	50,474	50,474	50,474	50,474	50,474	50,474	96,422	55,000
		마이너스옵션	475,534	47,553	47,553	47,553	47,553	47,553	47,553	47,553	87,663	55,000
059.9700G (59G)	5층~ 최상층	기본형	538,530	53,853	53,853	53,853	53,853	53,853	53,853	53,853	106,559	55,000
		마이너스옵션	509,202	50,920	50,920	50,920	50,920	50,920	50,920	50,920	97,762	55,000
059.8200H (59H)	1층	기본형	495,050	49,505	49,505	49,505	49,505	49,505	49,505	49,505	93,515	55,000
		마이너스옵션	465,795	46,580	46,580	46,580	46,580	46,580	46,580	46,580	84,735	55,000
	2층	기본형	500,310	50,031	50,031	50,031	50,031	50,031	50,031	50,031	95,093	55,000
		마이너스옵션	471,055	47,106	47,106	47,106	47,106	47,106	47,106	47,106	86,313	55,000
	3층	기본형	510,850	51,085	51,085	51,085	51,085	51,085	51,085	51,085	98,255	55,000
		마이너스옵션	481,595	48,160	48,160	48,160	48,160	48,160	48,160	48,160	89,475	55,000
	4층	기본형	521,380	52,138	52,138	52,138	52,138	52,138	52,138	52,138	101,414	55,000
		마이너스옵션	492,125	49,213	49,213	49,213	49,213	49,213	49,213	49,213	92,634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526,650	52,665	52,665	52,665	52,665	52,665	52,665	52,665	102,995	55,000
		마이너스옵션	497,395	49,740	49,740	49,740	49,740	49,740	49,740	49,740	94,215	55,000
069.8200P (P69)	2층	기본형	566,430	56,643	56,643	56,643	56,643	56,643	56,643	56,643	94,929	75,000
		마이너스옵션	534,815	53,482	53,482	53,482	53,482	53,482	53,482	53,482	85,441	75,000
	4층	기본형	590,280	59,028	59,028	59,028	59,028	59,028	59,028	59,028	102,084	75,000
		마이너스옵션	558,665	55,867	55,867	55,867	55,867	55,867	55,867	55,867	92,596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596,250	59,625	59,625	59,625	59,625	59,625	59,625	59,625	103,875	75,000
		마이너스옵션	564,635	56,464	56,464	56,464	56,464	56,464	56,464	56,464	94,387	75,000
074.9300O (74)	1층	기본형	607,700	60,770	60,770	60,770	60,770	60,770	60,770	60,770	107,310	75,000
		마이너스옵션	571,531	57,153	57,153	57,153	57,153	57,153	57,153	57,153	96,460	75,000
	2층	기본형	614,160	61,416	61,416	61,416	61,416	61,416	61,416	61,416	109,248	75,000
		마이너스옵션	577,991	57,799	57,799	57,799	57,799	57,799	57,799	57,799	98,398	75,000
	3층	기본형	627,090	62,709	62,709	62,709	62,709	62,709	62,709	62,709	113,127	75,000
		마이너스옵션	590,921	59,092	59,092	59,092	59,092	59,092	59,092	59,092	102,277	75,000
	4층	기본형	640,020	64,002	64,002	64,002	64,002	64,002	64,002	64,002	117,006	75,000
		마이너스옵션	603,851	60,385	60,385	60,385	60,385	60,385	60,385	60,385	106,156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646,490	64,649	64,649	64,649	64,649	64,649	64,649	64,649	118,947	75,000
		마이너스옵션	610,321	61,032	61,032	61,032	61,032	61,032	61,032	61,032	108,097	75,000
077.4100A (P77A)	2층	기본형	628,010	62,801	62,801	62,801	62,801	62,801	62,801	62,801	113,403	75,000
		마이너스옵션	590,644	59,064	59,064	59,064	59,064	59,064	59,064	59,064	102,196	75,000
	4층	기본형	654,450	65,445	65,445	65,445	65,445	65,445	65,445	65,445	121,335	75,000
		마이너스옵션	617,084	61,708	61,708	61,708	61,708	61,708	61,708	61,708	110,128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661,070	66,107	66,107	66,107	66,107	66,107	66,107	66,107	123,321	75,000
		마이너스옵션	623,704	62,370	62,370	62,370	62,370	62,370	62,370	62,370	112,114	75,000
077.4100C (P77C)	5층~ 최상층	기본형	654,530	65,453	65,453	65,453	65,453	65,453	65,453	65,453	121,359	75,000
		마이너스옵션	617,164	61,716	61,716	61,716	61,716	61,716	61,716	61,716	110,152	75,000
084.7800A (84A)	3층	기본형	695,040	69,504	69,504	69,504	69,504	69,504	69,504	69,504	133,512	75,000
		마이너스옵션	656,651	65,665	65,665	65,665	65,665	65,665	65,665	65,665	121,996	75,000
	4층	기본형	709,370	70,937	70,937	70,937	70,937	70,937	70,937	70,937	137,811	75,000
		마이너스옵션	670,981	67,098	67,098	67,098	67,098	67,098	67,098	67,098	126,295	7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16,540	71,654	71,654	71,654	71,654	71,654	71,654	71,654	139,962	75,000
		마이너스옵션	678,151	67,815	67,815	67,815	67,815	67,815	67,815	67,815	128,446	75,000
084.9900B (84B)	5층~ 최상층	기본형	703,950	70,395	70,395	70,395	70,395	70,395	70,395	70,395	136,185	75,000
		마이너스옵션	665,466	66,547	66,547	66,547	66,547	66,547	66,547	66,547	124,637	75,000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구조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 · 호수를 산정하고 복층세대의 경우 하부층을 기준으로 층 ·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분양가는 층별,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주택형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확장형 발코니출입문(PD), 디지털도어록	욕실문틀 하부 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도장마감), PL창호, 대피공간 창호
② 바닥	합판마루,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귀틀)	바닥방수,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벽지(초배포함), 거실(아트월, MDF판, 폴리싱타일, 무늬목시트 등), 주방 벽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경량벽체,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단열재, 석고보드, 경량콘크리트판넬(세대칸막이벽), 발코니 벽도장(수성페인트)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등박스 몰딩, 반자돌림	경량천정틀 및 석고보드, 우물천정, 커튼박스, 발코니천정 도장,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⑤ 욕실	천정재(천정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공용욕실),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레인지후드, 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절수페달 포함),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소방관련시설, 전기배관 및 배선, 설비배관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김치냉장고장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설배배관, 거실월패드, 소방감지기, 침입감지기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현관중문, 붙박이장, 인덕션,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 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 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5.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 • 호(주택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주택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욕실1	욕실2
59A	기본공사비(A)	84,978	27,094	1,699	12,126	13,033	24,892						6,135
	확장공사비(B)	91,302	28,484	2,202	12,802	13,744	27,702						6,368
	계약자부담액(B-A)	6,324	1,390	504	676	711	2,810						234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375	1,181	428	575	604	2,389						199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주택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현관 팬트리	주방 팬트리	욕실1	욕실2
59B	기본공사비(A)	85,016	30,344	1,699	8,885	18,802	25,286						
	확장공사비(B)	90,509	31,953	2,202	9,455	20,175	26,723						
	계약자부담액(B-A)	5,493	1,609	504	570	1,374	1,437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4,669	1,368	428	484	1,168	1,222						
59C	기본공사비(A)	86,532	23,258	2,387	19,047		31,600					10,239	
	확장공사비(B)	91,762	24,508	2,890	19,265		34,495					10,604	
	계약자부담액(B-A)	5,231	1,250	504	218		2,895					365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4,446	1,062	428	185		2,460					310	
59D	기본공사비(A)	83,844	21,124	23,909	21,201			8,596					9,014
	확장공사비(B)	88,356	22,546	25,388	21,866			9,249					9,307
	계약자부담액(B-A)	4,512	1,422	1,479	665			653					293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3,835	1,208	1,257	565			555					249
59E	기본공사비(A)	87,375	23,789	1,699	21,752		40,135						
	확장공사비(B)	91,311	24,304	2,202	22,289		42,515						
	계약자부담액(B-A)	3,935	514	504	537		2,38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3,345	437	428	457		2,023						
59G	기본공사비(A)	84,835	27,512	1,699	12,263	13,181	25,198						4,983
	확장공사비(B)	91,139	28,912	2,202	12,942	13,895	28,017						5,171
	계약자부담액(B-A)	6,304	1,400	504	679	714	2,819						189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359	1,190	428	577	607	2,396						161
59H	기본공사비(A)	82,568	19,870	20,340	14,744	14,692		12,921					
	확장공사비(B)	86,854	20,928	20,981	15,478	15,424		14,044					
	계약자부담액(B-A)	4,286	1,057	641	733	731		1,12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3,643	899	545	623	622		954					
P69	기본공사비(A)	113,619	21,861	15,915	658	14,195	32,380	21,874	449	6,286			
	확장공사비(B)	121,188	22,949	15,683	663	15,400	36,015	23,004	798	6,676			
	계약자부담액(B-A)	7,570	1,088	(233)	5	1,206	3,634	1,130	349	39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434	925	(198)	4	1,025	3,089	960	296	331			
74	기본공사비(A)	95,314	23,935	1,702	15,123	16,386	20,886	10,643			6,639		
	확장공사비(B)	101,717	25,252	2,213	15,934	17,262	23,186	10,969			6,902		
	계약자부담액(B-A)	6,403	1,317	510	811	876	2,301	326			262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443	1,119	434	689	745	1,956	278			223		
P77A	기본공사비(A)	120,449	800	1,702	17,285	17,104	57,363	18,797	740	6,658			
	확장공사비(B)	130,325	800	2,213	17,370	18,585	63,755	20,021	449	7,131			
	계약자부담액(B-A)	9,876		510	86	1,481	6,392	1,224	(291)	474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8,394		434	73	1,259	5,433	1,041	(247)	403			
P77C	기본공사비(A)	121,876	800	2,460	17,380	17,203	57,685	18,910	740	6,698			
	확장공사비(B)	131,749	800	2,971	17,465	18,683	64,076	20,133	449	7,171			
	계약자부담액(B-A)	9,873		510	85	1,481	6,390	1,224	(291)	473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8,392		434	72	1,258	5,432	1,040	(247)	402			
84A	기본공사비(A)	101,674	25,170	1,702	16,540	16,844	21,606	12,156			7,655		
	확장공사비(B)	108,685	26,581	2,213	17,412	17,728	24,290	12,508			7,952		
	계약자부담액(B-A)	7,011	1,411	510	872	884	2,684	352			298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5,959	1,199	434	741	751	2,281	299			253		
84B	기본공사비(A)	109,094	27,396	18,083	14,603	14,647	28,375						5,991
	확장공사비(B)	116,290	29,642	19,211	15,197	15,243	30,756						6,241
	계약자부담액(B-A)	7,196	2,246	1,128	595	596	2,381						250
	마이너스 옵션시 계약자 부담액	6,116	1,909	959	505	507	2,024						212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10% (계약시)	중도금 1차 10% ('27.06.23)	중도금 2차 10% ('27.10.20)	중도금 3차 10% ('28.02.23)	중도금 4차 10% ('28.06.21)	중도금 5차 10% ('28.10.25)	중도금 6차 10% ('29.02.21)	잔금 (입주시)
59A	기본형	6,324	632	632	632	632	632	632	632	1,900
	마이너스옵션	5,375	538	538	538	538	538	538	538	1,609
59B	기본형	5,493	549	549	549	549	549	549	549	1,650
	마이너스옵션	4,669	467	467	467	467	467	467	467	1,400
59C	기본형	5,231	523	523	523	523	523	523	523	1,570
	마이너스옵션	4,446	445	445	445	445	445	445	445	1,331
59D	기본형	4,512	451	451	451	451	451	451	451	1,355
	마이너스옵션	3,835	384	384	384	384	384	384	384	1,147
59E	기본형	3,935	394	394	394	394	394	394	394	1,177
	마이너스옵션	3,345	335	335	335	335	335	335	335	1,000
59G	기본형	6,304	630	630	630	630	630	630	630	1,894
	마이너스옵션	5,359	536	536	536	536	536	536	536	1,607
59H	기본형	4,286	429	429	429	429	429	429	429	1,283
	마이너스옵션	3,643	364	364	364	364	364	364	364	1,095
P69	기본형	7,570	757	757	757	757	757	757	757	2,271
	마이너스옵션	6,434	643	643	643	643	643	643	643	1,933
74	기본형	6,403	640	640	640	640	640	640	640	1,923
	마이너스옵션	5,443	544	544	544	544	544	544	544	1,635
P77A	기본형	9,876	988	988	988	988	988	988	988	2,960
	마이너스옵션	8,394	839	839	839	839	839	839	839	2,521
P77C	기본형	9,873	987	987	987	987	987	987	987	2,964
	마이너스옵션	8,392	839	839	839	839	839	839	839	2,519
84A	기본형	7,011	701	701	701	701	701	701	701	2,104
	마이너스옵션	5,959	596	596	596	596	596	596	596	1,787
84B	기본형	7,196	720	720	720	720	720	720	720	2,156
	마이너스옵션	6,116	612	612	612	612	612	612	612	1,832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붙박이장,바닥재,시스템에어컨.인덕션 등**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주택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026.12.10.(목)~2026.12.11.(금)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다중선택 시 시공면적과 부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중선택에 따라 변경되는 시공면적 등을 고려한 가격변경은 불가하며,추후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제기 및 옵션변경 등은 불가하오니 선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주택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59A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86	79	79	79	79	79	79	79	233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716	172	172	172	172	172	172	172	512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 싱크볼 +싱크수전(유광)	3-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675	368	368	368	368	368	368	368	1,099	3-1, 3-2 중택1
			3-2 [3-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 -벽부 독립형)	5,210	521	521	521	521	521	521	521	1,563	
		미설치	4-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29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48	4-1, 4-2 중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2,418	242	242	242	242	242	242	242	724	
	침실	미설치	5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4,188	419	419	419	419	419	419	419	1,255	
		미설치	6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5,192	519	519	519	519	519	519	519	1,559	
		미설치	7 침실2 붙박이장	1,246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71	
		미설치	8 침실3 붙박이장	1,226	123	123	123	123	123	123	123	365	
	거실	실크벽지	9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388	239	239	239	239	239	239	239	715	
	욕실	일반 배기휀	10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 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1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 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2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3-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 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936	194	194	194	194	194	194	194	578	13-1, 13-2 중택1
			13-2 [13-1] +천정형 실링팬(거실)	2,375	238	238	238	238	238	238	238	709	
		일반등	14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92	259	259	259	259	259	259	259	779	13-1 또는 13-2선택시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5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6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7-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17-1, 17-2 중택1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7,387	739	739	739	739	739	739	739	2,214	
59B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53	75	75	75	75	75	75	75	228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813	181	181	181	181	181	181	181	546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3-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133	313	313	313	313	313	313	313	942	3-1, 3-2 중택1
			3-2 [3-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 -ㄷ자 연장)	4,735	474	474	474	474	474	474	474	1,417	
		미설치	4-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34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53	4-1, 4-2 중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2,424	242	242	242	242	242	242	242	730	
	침실	미설치	5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4,173	417	417	417	417	417	417	417	1,254	
		미설치	6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5,695	570	570	570	570	570	570	570	1,705	
		미설치	7 침실2 붙박이장	1,226	123	123	123	123	123	123	123	365	
		미설치	8 침실3 붙박이장	1,225	123	123	123	123	123	123	123	364	
	거실	실크벽지	9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500	250	250	250	250	250	250	250	750	
	욕실	일반 배기휀	10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 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1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포함) [욕실2]하부수납장일체형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2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3-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주방)+감성조명 (거실)	1,684	168	168	168	168	168	168	168	508	13-1, 13-2 중택1
			13-2 [13-1]+천정형 실링팬(거실)	2,123	212	212	212	212	212	212	212	639	
		일반등	14 매입조명(욕실1, 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602	260	260	260	260	260	260	260	782	13-1 또는 13-2선택시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5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6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7-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17-1, 17-2 중택1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7,387	739	739	739	739	739	739	739	2,214	

주택 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59C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47	75	75	75	75	75	75	75	222	
	현관	미설치	❷ 중문(3연동)	1,718	172	172	172	172	172	172	172	514	
	복도	미설치	❸ 복도 팬트리	1,089	109	109	109	109	109	109	109	326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❹-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200	320	320	320	320	320	320	320	960	❹-1, ❹-2 중택1
			❹-2 [❹-1]+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 -ㄷ자 연장)	5,522	552	552	552	552	552	552	552	1,658	
		미설치	❺-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93	189	189	189	189	189	189	189	570	❺-1, ❺-2 중택1
			❺-2 냉장고장+수납장	2,469	247	247	247	247	247	247	247	740	
	침실	미설치	❻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611	361	361	361	361	361	361	361	1,084	
		미설치	❼ 침실2 붙박이장	1,246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71	
	거실	실크벽지	❽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3,191	319	319	319	319	319	319	319	958	
	욕실	일반 배기휀	❾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❿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일체형세면대+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⓫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⓬-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주방)+감성조명(거실)	1,934	193	193	193	193	193	193	193	583	⓬-1, ⓬-2 중택1
			⓬-2 [⓬-1]+천정형 실링팬(거실)	2,373	237	237	237	237	237	237	237	714	
		일반등	⓭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감성조명(침실1, 침실2)	1,798	180	180	180	180	180	180	180	538	⓬-1 또는 ⓬-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⓮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⓯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⓰-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⓰-1, ⓰-2 중택1
			⓰-2 거실+침실1+침실2 (실내기 3대)	7,302	730	730	730	730	730	730	730	2,192	
59D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82	78	78	78	78	78	78	78	236	
	현관	미설치	❷ 중문(여닫이)	1,804	180	180	180	180	180	180	180	544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❸-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2,823	282	282	282	282	282	282	282	849	❸-1, ❸-2 중택1
			❸-2 [❸-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독립형)	4,257	426	426	426	426	426	426	426	1,275	
		미설치	❹-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29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48	❹-1, ❹-2 중택1
			❹-2 냉장고장+수납장	2,542	254	254	254	254	254	254	254	764	
	침실	미설치	❺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4,085	409	409	409	409	409	409	409	1,222	
		미설치	❻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909	391	391	391	391	391	391	391	1,172	
		미설치	❼ 침실2 드레스룸 : 가구도어 + 시스템 선반	1,449	145	145	145	145	145	145	145	434	
	거실	실크벽지	❽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1,781	178	178	178	178	178	178	178	535	
	욕실	일반 배기휀	❾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❿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⓫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⓬-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주방)+감성조명(거실)	1,918	192	192	192	192	192	192	192	574	⓬-1,⓬-2 중택1
			⓬-2 [⓬-1]+천정형 실링팬(거실)	2,357	236	236	236	236	236	236	236	705	
		일반등	⓭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감성조명(침실1, 침실2)	1,805	181	181	181	181	181	181	181	538	⓬-1 또는 ⓬-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⓮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⓯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⓰-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⓰-1, ⓰-2 중택1
			⓰-2 거실+침실1+침실2 (실내기 3대)	7,302	730	730	730	730	730	730	730	2,192	
59E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07	71	71	71	71	71	71	71	210	
	현관	미설치	❷ 중문(노출형 원슬라이딩)	1,481	148	148	148	148	148	148	148	445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❸-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2,898	290	290	290	290	290	290	290	868	❸-1, ❸-2 중택1
			❸-2 [❸-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ㄷ자 연장)	4,148	415	415	415	415	415	415	415	1,243	
		미설치	❹-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983	198	198	198	198	198	198	198	597	❹-1, ❹-2 중택1
			❹-2 냉장고장+수납장	2,675	268	268	268	268	268	268	268	799	
	침실	미설치	❺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2,484	248	248	248	248	248	248	248	748	
		미설치	❻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4,040	404	404	404	404	404	404	404	1,212	
		미설치	❼ 침실2 붙박이장	1,214	121	121	121	121	121	121	121	367	
	거실	실크벽지	❽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875	288	288	288	288	288	288	288	859	

주택 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59E	욕실	일반 배기휀	9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0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 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1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2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930	193	193	193	193	193	193	193	579	12-1, 12-2 중 택1
			12-2 [12-1]+천정형 실링팬(거실)	2,369	237	237	237	237	237	237	237	710	
		일반등	13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감성조명(침실1, 침실2)	1,811	181	181	181	181	181	181	181	544	12-1 또는 12-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4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5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6-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16-1, 16-2 중 택1
			16-2 거실+침실1+침실2 (실내기 3대)	7,302	730	730	730	730	730	730	730	2,192	
59G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73	77	77	77	77	77	77	77	234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718	172	172	172	172	172	172	172	514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3-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4,113	411	411	411	411	411	411	411	1,236	3-1, 3-2 중 택1
			3-2 [3-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벽부 독립형)	5,650	565	565	565	565	565	565	565	1,695	
		미설치	4-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65	187	187	187	187	187	187	187	556	4-1, 4-2 중 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2,408	241	241	241	241	241	241	241	721	
	침실	미설치	5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4,070	407	407	407	407	407	407	407	1,221	
		미설치	6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766	377	377	377	377	377	377	377	1,127	
		미설치	7 침실2 붙박이장	1,246	125	125	125	125	125	125	125	371	
		미설치	8 침실3 붙박이장	1,231	123	123	123	123	123	123	123	370	
	거실	실크벽지	9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383	238	238	238	238	238	238	238	717	
	욕실	일반 배기휀	10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1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 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2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3-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946	195	195	195	195	195	195	195	581	13-1, 13-2 중 택1
			13-2 [13-1]+천정형 실링팬(거실)	2,385	239	239	239	239	239	239	239	712	
		일반등	14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95	260	260	260	260	260	260	260	775	13-1 또는 13-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5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6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7-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17-1, 17-2 중 택1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7,387	739	739	739	739	739	739	739	2,214	
59H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786	79	79	79	79	79	79	79	233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720	172	172	172	172	172	172	172	516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3-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026	303	303	303	303	303	303	303	905	3-1, 3-2 중 택1
			3-2 [3-1] + 기본주방 연장(엔지니어드스톤)	5,763	576	576	576	576	576	576	576	1,731	
		미설치	4-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921	192	192	192	192	192	192	192	577	4-1, 4-2 중 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2,468	247	247	247	247	247	247	247	739	
	침실	미설치	5 조명형 슬라이딩장	2,767	277	277	277	277	277	277	277	828	
		미설치	6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262	326	326	326	326	326	326	326	980	
	거실	실크벽지	7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422	242	242	242	242	242	242	242	728	
	욕실	일반 배기휀	8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9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 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0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1-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주방)+감성조명(거실)	1,703	170	170	170	170	170	170	170	513	11-1, 11-2 중 택1
			11-2 [11-1]+천정형 실링팬(거실)	2,142	214	214	214	214	214	214	214	644	
		일반등	12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93	259	259	259	259	259	259	259	780	11-1 또는 11-2 선택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3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4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5-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09	431	431	431	431	431	431	431	1,292	15-1, 15-2 중 택1
			15-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7,387	739	739	739	739	739	739	739	2,214	

주택 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P69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972	97	97	97	97	97	97	97	293	
	현관	미설치	❷ 중문(3연동)	1,744	174	174	174	174	174	174	174	526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❸-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650	365	365	365	365	365	365	365	1,095	
		미설치	❹-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29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48	❹-1, ❹-2 중택1
			❹-2 냉장고장+수납장	2,515	252	252	252	252	252	252	252	751	
	침실	미설치	❺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4,993	499	499	499	499	499	499	499	1,500	
		미설치	❻ 침실2 붙박이장	1,540	154	154	154	154	154	154	154	462	
	거실	실크벽지	❼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6,843	684	684	684	684	684	684	684	2,055	
	욕실	일반 배기휀	❽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❾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일체형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❿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⓫-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주방)+감성조명(거실)	1,804	180	180	180	180	180	180	180	544	⓫-1, ⓫-2중택1
			⓫-2 [⓫-1]+천정형 실링팬(거실)	2,243	224	224	224	224	224	224	224	675	
		일반등	⓬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94	259	259	259	259	259	259	259	781	⓫-1 또는 ⓫-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⓭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⓮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⓯-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145	415	415	415	415	415	415	415	1,240	⓯-1, ⓯-2 중택1
			⓯-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083	808	808	808	808	808	808	808	2,427	
74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1,027	103	103	103	103	103	103	103	306	
	현관	미설치	❷ 중문(3연동)	1,824	182	182	182	182	182	182	182	550	
	주방	벽(타일)+상판 (MMA)+ 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❸-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4,048	405	405	405	405	405	405	405	1,213	❸-1, ❸-2 중택1
			❸-2 [❸-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독립형)	5,562	556	556	556	556	556	556	556	1,670	
		미설치	❹-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899	190	190	190	190	190	190	190	569	❹-1, ❹-2 중택1
			❹-2 냉장고장+수납장	2,442	244	244	244	244	244	244	244	734	
	침실	미설치	❺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4,260	426	426	426	426	426	426	426	1,278	
		미설치	❻ 침실1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6,493	649	649	649	649	649	649	649	1,950	
		미설치	❼ 침실2 붙박이장	1,313	131	131	131	131	131	131	131	396	
	침실	미설치	❽ 침실3 붙박이장	1,304	130	130	130	130	130	130	130	394	
	거실	실크벽지	❾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2,721	272	272	272	272	272	272	272	817	
	욕실	일반 배기휀	❿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⓫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⓬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⓭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2,045	205	205	205	205	205	205	205	610	⓭-1, ⓭-2 중택1
			⓭-2 [⓭-1]+천정형 실링팬(거실)	2,544	254	254	254	254	254	254	254	766	
		일반등	⓮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95	260	260	260	260	260	260	260	775	⓭-1 또는 ⓭-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⓯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⓰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⓱-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321	432	432	432	432	432	432	432	1,297	⓱-1, ⓱-2 중택1
			⓱-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311	831	831	831	831	831	831	831	2,494	
P77A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❶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1,193	119	119	119	119	119	119	119	360	
	현관	미설치	❷ 중문(3연동)	1,855	186	186	186	186	186	186	186	553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❸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589	359	359	359	359	359	359	359	1,076	
		미설치	❹-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983	198	198	198	198	198	198	198	597	❹-1, ❹-2 중택1
			❹-2 냉장고장+수납장	2,670	267	267	267	267	267	267	267	801	
	침실	미설치	❺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3,157	316	316	316	316	316	316	316	945	
		가구도어	❻ 통합드레스룸 : 여닫이 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99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198	
		미설치	❼ 침실2 붙박이장	1,265	127	127	127	127	127	127	127	376	
		미설치	❽ 침실3 붙박이장	1,6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480	

주택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합계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P77A	거실	실크벽지	9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7,337	734	734	734	734	734	734	734	2,199	
	욕실	일반 배기휀	10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1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2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3-1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785	179	179	179	179	179	179	179	532	13-1, 13-2 중 택1
			13-2 [13-1]+천정형 실링팬(거실)	2,284	228	228	228	228	228	228	228	688	
		일반등	14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82	258	258	258	258	258	258	258	776	13-1 또는 13-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5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6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7-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241	424	424	424	424	424	424	424	1,273	17-1, 17-2 중 택1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208	821	821	821	821	821	821	821	2,461	
P77C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1,193	119	119	119	119	119	119	119	360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855	186	186	186	186	186	186	186	553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3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3,589	359	359	359	359	359	359	359	1,076	
		미설치	4-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983	198	198	198	198	198	198	198	597	4-1, 4-2 중 택1
			4-2 냉장고장+수납장	2,670	267	267	267	267	267	267	267	801	
	침실	미설치	5 침실1 조명형 슬라이딩장	3,157	316	316	316	316	316	316	316	945	
		가구도어	6 통합드레스룸 : 여닫이 도어+ 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3,998	400	400	400	400	400	400	400	1,198	
		미설치	7 침실2 붙박이장	1,265	127	127	127	127	127	127	127	376	
		미설치	8 침실3 붙박이장	1,6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480	
	거실	실크벽지	9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7,337	734	734	734	734	734	734	734	2,199	
	욕실	일반 배기휀	10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1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2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3-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785	179	179	179	179	179	179	179	532	13-1, 13-2 중 택1
			13-2 [13-1]+천정형 실링팬(거실)	2,284	228	228	228	228	228	228	228	688	
		일반등	14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82	258	258	258	258	258	258	258	776	13-1 또는 13-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5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6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7-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241	424	424	424	424	424	424	424	1,273	17-1, 17-2 중 택1
			17-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208	821	821	821	821	821	821	821	2,461	
84A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1,150	115	115	115	115	115	115	115	345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840	184	184	184	184	184	184	184	552	
	주방	미설치	3 수납장	986	99	99	99	99	99	99	99	293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4-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4,009	401	401	401	401	401	401	401	1,202	4-1, 4-2 중 택1
			4-2 [4-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독립형)	5,884	588	588	588	588	588	588	588	1,768	
		미설치	5-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1,934	193	193	193	193	193	193	193	583	5-1, 5-2 중 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2,477	248	248	248	248	248	248	248	741	
	침실	미설치	6 조명형 슬라이딩장	4,476	448	448	448	448	448	448	448	1,340	
		미설치	7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 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파우더 포함)	6,174	617	617	617	617	617	617	617	1,855	
		미설치	8 침실2 붙박이장	1,51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454	
		미설치	9 침실3 붙박이장	1,511	151	151	151	151	151	151	151	454	
	거실	실크벽지	10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3,042	304	304	304	304	304	304	304	914	
	욕실	일반 배기휀	1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2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3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4-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2,149	215	215	215	215	215	215	215	644	14-1, 14-2 중 택1
			14-2 [14-1]+천정형 실링팬(거실)	2,648	265	265	265	265	265	265	265	793	
		일반등	15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68	257	257	257	257	257	257	257	769	14-1 또는 14-2 선택 시 가능

주택타입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합계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계약금(계약시) 10%	중도금 1차 10%	중도금 2차 10%	중도금 3차 10%	중도금 4차 10%	중도금 5차 10%	중도금 6차 10%	잔금	비고
					계약시	'27.06.23	'27.10.20	'28.02.23	'28.06.21	'28.10.25	'29.02.21	입주시	
84A	가전	가스쿡탑(3구)	16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7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8-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739	474	474	474	474	474	474	474	1,421	18-1, 18-2 중택1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685	869	869	869	869	869	869	869	2,602	
84B	전체	강화합판마루 (95*800)	1 광폭 강화합판마루(165*1200)	1,170	117	117	117	117	117	117	117	351	
	현관	미설치	2 중문(3연동)	1,833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52	
	복도	미설치	3 복도 팬트리	1,123	112	112	112	112	112	112	112	339	
	주방	벽(타일)+상판 (MMA)+기본싱크볼+ 싱크수전(유광)	4-1 벽, 상판 (엔지니어드스톤)+상부장 간접조명+사각 싱크볼+싱크수전(무광)	2,579	258	258	258	258	258	258	258	773	4-1, 4-2 중택1
			4-2 [4-1] +아일랜드(엔지니어드스톤-독립형)	4,023	402	402	402	402	402	402	402	1,209	
		미설치	5-1 냉장고장+김치냉장고장	2,578	258	258	258	258	258	258	258	772	5-1, 5-2 중택1
			5-2 냉장고장+수납장	3,126	313	313	313	313	313	313	313	935	
	침실	미설치	6 조명형 슬라이딩장(파우더 포함)	4,022	402	402	402	402	402	402	402	1,208	
		미설치	7 통합드레스룸 : 3연동 슬라이딩도어+조명형 시스템 선반	2,716	272	272	272	272	272	272	272	812	
		미설치	8 침실2 붙박이장	1,509	151	151	151	151	151	151	151	452	
		미설치	9 침실3 붙박이장	1,509	151	151	151	151	151	151	151	452	
	거실	실크벽지	10 시트판넬(거실, 복도, 주방, 현관)	4,388	439	439	439	439	439	439	439	1,315	
	욕실	일반 배기휀	11 욕실1 다기능 휀	540	54	54	54	54	54	54	54	162	
		기본세면대 (하부커버 분리형) + 기본욕실장 (슬라이딩형)	12 [욕실1] 하부커버 일체형 세면대 +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 살균기 포함) [욕실2]하부수납장 일체형 세면대+ 슬라이딩형 욕실장(간접조명,살균기포함)	650	65	65	65	65	65	65	65	195	
		기본 수전 및 악세서리류(유광)	13 수전 및 악세서리류(무광)+ 코너선반	687	69	69	69	69	69	69	69	204	
	조명	일반등+우물천장 (확장형)+거실디밍+ 신발장(비조명)	14-1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신발장 하부)+매입조명(거실, 주방)+감성조명(거실)	1,832	183	183	183	183	183	183	183	551	14-1, 14-2 중택1
			14-2 [14-1+천정형 실링팬(거실)	2,331	233	233	233	233	233	233	233	700	
		일반등	15 매입조명(욕실1,욕실2, 침실1, 침실2, 침실3)+감성조명(침실1, 침실2, 침실3)	2,565	257	257	257	257	257	257	257	766	14-1 또는 14-2 선택 시 가능
	가전	가스쿡탑(3구)	16 인덕션(3구)	590	59	59	59	59	59	59	59	177	
		월패드 10인치	17 월패드 13인치	244	24	24	24	24	24	24	24	76	
	시스템에어컨	냉매배관 (거실+침실1) 설치	18-1 거실+침실1 (실내기 2대)	4,739	474	474	474	474	474	474	474	1,421	18-1, 18-2 중택1
			18-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실내기 4대)	8,685	869	869	869	869	869	869	869	2,602	

6.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 잔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및 잔금 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 · 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인천계양지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수도권)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 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 신생아 · 다자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31)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되, 공급세대가 최소물량(3세대 미만)일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지역→기타지역(수도권) 순으로 배정합니다.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50% 물량의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비율 만큼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26.10.21.)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당첨자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협의양도인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 지역균형발전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지역균형특별공급 제2호 외국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혼인신고 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

※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자산보유기준산정 대상에서 제외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중요)**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4항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 소유 주택도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자산보유기준</th><th colspan="3">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td>건축물</td><td colspan="2">•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 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건 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r><td colspan="2">시설물</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colspan="2">•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구 · 읍 · 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r><td>자동차</td><td>45,420천원
이하</td><td colspan="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td></tr>
</table>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부동산(건물+토지)	237,050천원 이하	258,600천원 이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고
자동차	49,960천원 이하	54,510천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5년식 자동차를 2024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중요)**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60㎡ 이하	신생아 우선공급 (5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공급(1순위자) (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 (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다자녀가구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노부모부양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특별공급	생애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혼부부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신생아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배점 (우선공급,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추첨공급(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807,397	14,963,743	15,855,875	16,840,647	17,825,420	18,810,19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신청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일반공급(60㎡ 이하)	위 표의 가구원수 적용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중요)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Ⅲ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공통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이주자주택 제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이주자주택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이주자주택 제외)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예비배우자 포함)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2.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9.22)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8.31)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8.31.)**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9.17.(목) 10:00 ~2026.09.18.(금)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청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중요, 59C타입 외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타입)을 1순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1순위 외 기타 후순위는 주택형(타입) 배경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전청약 당첨된 주택형(타입) 외의 주택형(타입)을 1순위로 선택한 경우 사전청약 당첨된 주택타입을 1순위로 변경하여 본청약 선호순위 입력처리됩니다.(주의 : 본청약 신청을 위해 선호순위 입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선호 순위 미입력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형(타입)	본청약 선호순위 입력	
	1순위	기타 후순위
59A	59A	1순위 외 임의입력, 기타 후순위 입력 내용은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59D	59D	
59H	59H	
74	74	
84A	84A	
84B	84B	
69(복층)	P69	
77A(복층)	P77A	
77C(복층)	P77C	

- **(중요, 59C타입 사전청약 당첨자) 59C타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건설호수, 평형별 종류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되어 본청약에서 59C타입과 유사평면인 59E 중 1순위·2순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1순위·2순위 외 기타 후순위는 주택형(타입) 배경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9C·59E타입 외의 주택형(타입)을 1순위·2순위로 선택한 경우 59C·59E타입을 1순위·2순위로 변경하여 본청약 선호순위 입력처리됩니다. (주의 : 본청약 신청을 위해 선호순위 입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선호 순위 미입력시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전청약 당첨 주택형(타입)	본청약 선호순위 입력		
	1순위	2순위	기타 후순위
59C	59C 또는 59E	59E 또는 59C	59C·59E 외 임의입력, 기타 후순위 입력 내용은 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단, 현장접수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포기 필요)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 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 주택에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2026.09.23.(수)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09.28.(월) 10:00~2026.09.29.(화)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 일반 · 특별공급 당첨에 관계없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일반공급 신청』, 『특별공급 신청』 아님)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 신청을 하셔야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9.17(목)~18(금)**]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9.17(목)~18(금)**]에 미신청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포기)한 경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에 당첨시 **당첨자발표일[2026.10.21.(수)] 이후 사전청약에 사용한 입주자저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당첨자**[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로 관리됩니다.**

• **사전청약시 특별공급 당첨자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3. 인천계양 이주자주택 대상자

■ **신청자격**

- **이주대책대상자 :** 인천계양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공사로부터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9.30(수)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당첨자 선정방법**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본 유형의 경우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30.(수) 10:00 ~ 17:0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이주자주택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가에(당해 이주자주택 대지지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추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니다.(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제한,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등)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분리세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4.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 제27호의2의 도시활력증진/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 45조에 의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자체 철거민	필요 없음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문화가족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인천광역시청(지자체 철거민, 다문화가족), 인천보훈지청(국가유공자), 지자체(장애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북한이탈주민), 국방부(10년 이상 복무군인),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근로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9.30(수)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3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5. 협의양도인 ·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신청자격**

구분	신청자격
협의양도인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인천계양지구의 협의양도인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협의양도인 대상자의 경우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에 의거 **인천계양 A6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철거주택 소유자(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사전 조사-신청-배정(추첨)을 통해 우리 공사로부터 철거주택 소유자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통보 받은 분**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9.30(수)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협의양도인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으로 신청, 철거주택 소유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신청)

■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대상자 또는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동일 세대 내에 2인 이상의 공급대상자(상속 등에 따라 공급대상자 지위를 승계한 자 포함)가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공급]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특별공급 주택형(주택타입)별 전체 공급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Ⅳ. 신청 시 확인사항 - 7.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의양도인]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철거주택 소유자]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비대상자의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 관련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단, 일반공급으로 신청하여 당첨되신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자 자격으로 자격검증이 진행되오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6.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가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2호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공급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시책추진을 위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필요 없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9.30(수) 10:00 ~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이 원칙**입니다.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유의사항**

• 추천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수도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을 말함)에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첨 이후라도 부적격 처리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해당 시·도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예비대상자의 경우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26.09.30.)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생아 포함) 청약 접수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분과 함께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가 제공되며,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500% 범위에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9세 미만**(2007.09.01 ~ 2026.08.31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 **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 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3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0명	0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해당없음	0	
무주택 기 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없음	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미거주	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해당없음	0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의 기간을 계산하되, 신청자 및 배우자가 각각의 과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전체기간으로 판단 (단,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무관)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하고 25세에 혼인)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3)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7세인 배우자(25세에 혼인 이후 소유하던 주택을 26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1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신청자가 만 19세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

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 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예시 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3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9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2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9.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한정한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 페이지"<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혼인신고일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의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8.31.~2026.08.31.에 속한 자)이거나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 불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 페이지"<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및 혼인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3페이지 출산특례, 혼인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잔여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출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로 확인합니다.

※ (입양)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하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점수 항목**

가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0명	0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 3세 미만)	3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1	
	해당없음	0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11. 신생아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의 자녀**(2세가 되는 날을 포함)**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출산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3페이지 출산특례 참고)**

■ **당첨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7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인 자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2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점수 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 나머지 50%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자 및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점수 항목**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참고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해당없음	0	
나. 미성년 자녀의 수	3명 이상	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함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없음	0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 '나. 미성년 자녀의 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주택 수에 따라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12. 일반공급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경기도·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분 (주택공급 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②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7 페이지"<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③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6 페이지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6 페이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7페이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국방부의 추천을 받은 25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을 구비한 분이 신청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14페이지 "Ⅱ.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 자녀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5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 지역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12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전용 40㎡초과]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 당 사 항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14페이지 "Ⅱ. 신청기준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판정기준」 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3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4 : 기혼(만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2단계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낙첨자**(**<표7> 일반공급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른 **1순위자**로 한정)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 및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잔여 물량**을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분과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및 2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당첨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생)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미제출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또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산 및 양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상태가 입주기간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입주기간 시작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타입별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기타지역(수도권)**을 구분하여 접수받고,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선공급 등의 물량을 정해진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만큼 선 배정 후 잔여 주택에 대해 추첨공급하기 때문에, 추첨공급 물량이 없을 수 있습니다.**

Ⅳ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10.21.)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재당첨 제한 및 당첨자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제한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4.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 ·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5. 예비입주자 등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본청약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제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팀을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8>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또는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Ⅴ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9.17.(목) 10:00 ~ 09.18.(금)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사업지구 철거민, 지자체 철거민, 북한이탈주민,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다문화가족)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생아 특별공급 • 이주대책대상자 • 철거주택 소유자 특별공급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2026. 09. 30(수) (10:00 ~ 17:00)		
일반공급	•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1순위자), 추첨공급	2026.10.01.(목) 10:00 ~ 10.02(금) 17:00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26.09.30(수) 오후6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는 주택형(타입)별로 배정 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 가능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모든 유형(사전청약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의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시 인증이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받으시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이주자주택 · 국가유공자 · 협의양도인 · 철거주택 소유자 · 지역균형발전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Ⅵ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 · 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거나 간편인증 13종을 이용하여 로그인 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or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발표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청약 일정 확인)**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이주대책대상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소유자, 지역균형발전,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등)**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특별공급신청(기관추천/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or 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분양주택 선택 → 일반공급신청(신생아우선공급/우선공급(1순위자)/추첨공급) 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9.17.(10:00) ~ 2026.09.18.(17:00), (특별공급) 2026.09.30.(10:00~17:00), (일반공급) 2026.10.01.(10:00) ~ 2026.10.02.(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2026.09.28.(월) 10:00~29(화)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합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8.31.)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26.10.28.~2026.11.0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 **방문 제출((2026.10.28.(수)~2026.11.01.(일) 10:00~16:00), 주택전시관(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제출**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 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별표(*)없이 전체 숫자 표기되게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사전청약당첨자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⑧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자산·소득 조회용)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⑦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공공주택 60㎡ 이하의 경우)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⑩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양육사실 확인
	○	⑪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신생아 우선공급 관련] 급여 수령 내역 확인
	○	⑫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⑭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⑮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세 미만 자녀,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⑯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신생아 우선공급,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특별공급(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이주자주택, 지역균형발전,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 신생아) 당첨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이주자주택, 지역균형 발전)	○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협의양도인, 철거주택 소유자, 이주자주택, 지역균형 발전)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예비)배우자 및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특례 관련]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 가 있어 출산특례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⑥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표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	⑦ 재직증명서(복무확인서)	본인	• 해당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⑩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예비)배우자, 세대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	⑪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⑫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⑬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출산특례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서약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②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함하여 발급 • '08.1.1. 전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④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피부양 직계존속	•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		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의「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만 해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제출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신혼부부로서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예비)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③ 기본증명서	자녀	• 1순위자로서 혼인기간 중 자녀 출생 일자 확인 필요 시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⑤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예비)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신청자의 예비배우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재당첨, 주택소유사실 여부 확인
		○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③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아래 <표9> 참고)**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9>**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신생아 특별공급	○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또는 배우자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2세 미만 자녀(입양 포함) 증빙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자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전 당첨 여부 확인
		○	③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질병코드·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계약 체결 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⑦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양육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수령내역)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		⑧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등 확인
	○		⑨ 통장사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급여 수령 내역 확인

<표9>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 (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3. 계약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31.)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계약서류</th></tr>
<tr><td rowspan="5">본인
계약 시</td><td rowspan="4">현장계약</td><td colspan="2">① 계약금(현장 수납 하는 경우) 또는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 주택공급금액 10% + 발코니확장비용 계약금 10%, 옵션 선택에 따른 계약금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td></tr>
<tr><td colspan="2">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td></tr>
<tr><td colspan="2">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td></tr>
<tr><td colspan="2">④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이거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LH 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td></tr>
<tr><td>전자계약</td><td colspan="2">① 계약자 본인 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td></tr>
<tr><td rowspan="4">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td><td colspan="3">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 colspan="2">서명확인 방식</td></tr>
<tr><td>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 모집공고 첨부파일 또는 계약 장소에 비치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td><td colspan="2">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양식 다운로드 : LH청약플러스-청약-알려드려요-자료실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td></tr>
<tr><td>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td><td colspan="3">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td></tr>
</table>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 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 계약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부부공동명의 등 전매,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전매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Ⅷ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예시:총 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하오니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00지역본부 주택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or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추가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 체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음)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주 방	좌식 씽크대, 가스밸브 높이조정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욕실 1개소	단차 없애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방향 조정, 좌식 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절, 높낮이 조절 세면기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야간센서등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현장계약체결기간 (2026.12.17.~2026.12.18)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신분증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지구 여건**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6-26호)로 변경 승인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3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이행, 지자체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북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공항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명대로, 서측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측으로 벌말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 지구 서측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3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지자체 계획, 상위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계획된 공원·녹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에는 서운산단 및 계양산단(예정)이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으로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북측으로 한강, 아라천, 귤현천, 동측으로 굴포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서측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지구 밖 북동측에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차량 및 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변 일부에 방음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에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에는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약 1.6km)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북측 근린공원에 재활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인근 방공시설 등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인근 군 부대 사격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 및 토목공사와 민간 건축공사 등이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 행복주택, 뉴홈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 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S-BRT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약 전에 해당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청약·상담창구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A6블록은 택지지구 입주 공동주택블록으로서 주변 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공원·녹지 조경공사 등 진행에 따라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지구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중로2류-계5, 중로3류-계12, 대로2류-계2 등 도시계획도로에 연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 및 진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휀스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난간,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특수학교 등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폐기물 재활용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시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구 인근에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서·남측으로 연결녹지, 북측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이며,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는 설립(개교) 시기 등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
- 인접 공원·녹지 등과 연결되는 다수의 보행동선(공공보행통로 포함)이 계획되어 있으니 단지배치도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의 담장 및 구조물은 추후 토목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마감처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로의 진출입구 및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노상 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안내표지판 등은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도시계획도로에는 공동구가 설치될 예정으로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2.7m), 지하2층(2.3m)입니다.
- 본 단지의 주차장 설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노상)				
		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전기차	일반형	확장형	경형	장애인	전기차
800대 (1.20대)	계	356대	321대	39대	24대	56대	3대	-	-	1대	-
	1층	148	148	19	12	56	3	-	-	1	-
	2층	208	173	20	12	-	-	-	-	-	-

* 장애인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치는 각 동별로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주차구획 위치 및 주차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에 설치 예정인 전기차 충전기 35대 중 2대는 급속충전기, 33대는 완속충전기(1채널 12개, 2채널 21개)로 총 56면으로 계획되어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고 일부 동의 저층 레벨은 인접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 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의 높이는 지하1층 2.7m 지하2층은 2.3m로 계획되었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주차장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됩니다.
-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 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다른 동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분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서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으며 일부 복층세대가 있습니다[복층세대:P69,P77A,P77C]
-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각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문주는 601, 612동 사이 서측 진출입구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크기 변경,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단지 내외 차도, 보도, 조경수목, 기타 시설물 등의 계획으로 인해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공용시설물, 옹벽 및 석축 등의 폭, 높이, 위치 등으로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및 그 외 시설물의 외벽체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아파트 동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동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 및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구조 변경이 금지되며, 세대가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가까이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경차주차, 전기차 주차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소는 지하1층에만 위치하며 동별로 위치하고 있지 않은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주거동의 위치를 감안하여 설치되며, 일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냄새 및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저층 세대를 포함한 각 세대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필로티 내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절창고는 동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추가 수량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각 동 통로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기단부 외벽 마감은 동별로 높이,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 동표시, BI, 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 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조경면적 등의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창호,석재색상 포함)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관, 주현관, 지하주차장 출입구, 옹벽, 조경 및 기타 시설물은 유관 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 난간은 금속난간과 콘크리트 난간 조합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성능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최대2년) 입주지원시설 및 A/S센터 등으로 사용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문주, 식재, 바닥포장, 조경관련 식재, 수목,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01동 전면에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고 601동 필로티를 통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진출입이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601동 101호 측벽에 근린생활시설 화장실이 계획 되어 있음)
-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 차단기 설치 위치 및 통학차량 등의 정차구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차량 입차로 및 출차로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계획에 따라 차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은 유선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시 계양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골프연습장,주민카페,다목적실 등),다함께돌봄센터,작은도서관, 파티룸,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 (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피트니스센터내 실내골프 연습장 5면(좌·우타 겸용1면 포함)이 설치되며 전면 그물망에 타격하는 시설이며 전자식화상 연습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어 있고 휀룸 상부 지상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진동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환기탑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발코니에 접할 수 있습니다.(단지 모형 확인 요함) 또한 지하주차장 환기탑(DA),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 마감, 위치, 형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결송수관 주변 마감(석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므로 위치 이동 및 크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펌프실 및 저수조실은 612동 인근 지하에 계획 및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혹은 측면에 제연휀룸 급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천장 공기 유입은 환기를 위한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냉방장치(에어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지구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개별적인 취향에 맞춘 고온의

바닥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 및 보행자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611동, 612동 인근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구(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시야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스위치 및 PAD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며,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606, 607동 사이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02동, 603동, 605동, 611동, 612동 5개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설치수량 및 배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및 피뢰 보호 설비가 설치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법령에 따라 개방형녹지로 설계되어 경계부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나, 단차 구간 등에는 입주자 안전을 위해 난간,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옥상(지붕 층)에 지상파(디지털)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하주차장 지하 1층 휀룸-5, 휀룸-8에 아파트 601동, 603동, 610동, 612동 지붕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데크층, 옥상 지붕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 설치장소 및 설치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 전파수신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 인근 동 옥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피뢰침 설비,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 장치 등이 보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 눈부심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 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주변은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승강기 내부, 1층 및 최상층 계단실,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내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방범 CCTV 설치로 인하여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사생활 침해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얼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얼굴인식 데이터 수집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홈네트워크 시스템 연동을 위해서는 고정IP가 필요하며, 공용 통신요금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 주차 가능 공간과 차량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시스템은 각동 1층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고 설치 위치 및 크기는 현장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 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 동 일부 전·후면 조경공간에는 교목, 관목 등의 식재가 제한되며 식재 제한 및 시설물 설치 불가에 따른 환경권,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계약 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정 및 소방관련 사용승인 조건에 따라 공기안전매트는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 취입구, 발전기 배기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오·배수, 도시가스, 지역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승강로 및 권상기실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 예정입니다.(일부 세대에 설치되는 급수,급탕 계량기 동파방지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해당 세대 전기요금으로 부과됨)
- 문주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동에 눈부심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치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606, 607, 608, 609동의 경우 저층세대와 인접하여 조성되는 옥상 조경계획으로 사생활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단지배치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 등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단지 내 조경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됩니다.

■ 마감재 공통 유의 사항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 및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 결과와 지반 현황 및 각종 평가, 유관 기관의 심의 결과,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오차 발생으로 팸플릿과 모델하우스의 각 부위 치수는 본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품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팸플릿, 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니 먼저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마감재(출입문, 손잡이 등)는 팸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의 경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한 하자 및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입주자 부담 공사로 인해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 제외품목 (소방관련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함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는 견본주택에 시공된 기준과 달리 현장 여건 및 시공과정, 자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연 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도에 시공 및 표현된 줄눈(타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옵션제가 적용되어 옵션을 유무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하오니 옵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강화합판마루, 주방가구, 금속제창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합니다.
- 세대내·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동일 타입이라도 동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각종 붙박이 마감재(옵션 가구를 포함한 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하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가변형 벽체(건식 고정 벽체)는 일반 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 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펜트리, 욕실, 주방, 발코니, 아트월, 다용도실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품질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주택전시관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침실,거실,욕실,주방

- 커튼박스 깊이, 길이, 단부 여장이 각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고,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로 길이가 상이합니다.
-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공사용 하드웨어 및 악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포셀린타일 줄눈은 비워있습니다.(오픈 조인트로 시공)
- 주방 아일랜드 식탁(옵션)은 하부 마감이 없으며 고정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 디딤석(마루귀틀) 및 주방 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음이 발생합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칫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각 실사이 문하부, 강화합판마루 이음 시공부위는 자재 특성 상 미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인덕션 선택여부에 관계없이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악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팬은 세대 개별 직배기방식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냉매박스 설치 및 도배 후 스티커로 위치 표시함)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냉매매립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중문,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소방법에 따라 해당 구획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며, 기본형의 경우 현관과 드레스룸 위치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 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최상층 침실,거실은 천장부위 각 1개소 발코니 및 다용도실은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 세대분전반은 세대 내 벽체에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통신단자함이 현관 팬트리에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있습니다.
- 거실에 설치되는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는 네트워크 스위치와 환기·온도조절기 기능 통합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복층구조의 세대는 2층에 월패드 서브폰이 설치 되며, 현관문 제어만 가능합니다.
- 59D, 59E, 74, 84A, 84B, P69, P77A,C 타입 다용도실, 침실1, 거실, 드레스룸, 팬트리에는 각실에 맞는 내측방향으로 열리는 시스템 창호가 설치 됩니다.

■ 실외기실 및 발코니 등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 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고 부착 폭(두께)만큼 발코니 면적이 감소됩니다.
- 실외기실 등은 비생활 공간으로 결로 저감재가 설치되지 않고 수성페인트 마감 처리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발코니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창호의 규격이 작아 실외기 반입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짝 탈형이 불가능한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입상관 주변의 발코니 천장 마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발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에는 개폐 가능형 ABS 원형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개방 시에는 수도관, 전자기기의 동파 위험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가 세대내 다용도실에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 설치하는 경우, 다용도실 선반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다용도실 선반 기본 제공 사항 아님)
- 일부세대의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용 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벽면과 바닥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다용도실 조명기구는 천장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은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9D 타입을 제외한 모든 세대에는 자동빨래건조대가 다용도실에 설치 되어 있습니다.
- 59B,59H,P77A,P77C,84B타입 세대는 발코니(세탁실)에 환기를 위한 개별 배기팬이 설치 됩니다.
- 실외기실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각 세대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 또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P69, P77A, P77C타입 제외) 내 피난상황 발생시 대피를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층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필로티가 있는 저층부(3층)에는 실외기실 내에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해당공간의 창호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P69, P77A, P77C타입 세대는 각 세대 상부층에 피난상황 발생시 대피를 위한 대피공간이 계획 되어있으며 완강기가 설치됩니다.
- P69 타입 세대는 별도 실외기실이 없으며, 하부층 거실 전면 발코니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P77A, P77C 타입 세대의 실외기실은 상부층 침실1 발코니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P69, P77A, P77C 타입 단위세대 하부층 거실 전면 발코니 사용 한도
 - 외부로 개방된 공간으로서 임의 시공 시 건축법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 및 발코니 외관은 공용부에 준하는 관리 대상으로 동의 없는 개별 외관 변경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P77C 타입 단위세대 상부층 침실1에 접한 외부 공간은 공용부분으로서 관계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용부분의 독점적 사용을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동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용공간 등

- 건물 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이 없으며(천장 단열 노출) 별도의 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1층 및 지하층) 바닥의 경우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향후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뿜칠로 시공됩니다.
- 소방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각 동 외벽에 설치 됩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세대는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시공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물건을 적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하부층에 필로티가 있는 3층 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607동, 608동, 609동 1층 세대는 주변 부대시설(돌봄센터,어린이집,관리사무소,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옥상층 부분으로 입주민 이동이 빈번하여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개교 시기

학교	위치	학교명(가칭)	개교시기
초등학교	초1	미정	'29.3 예정
중학교	중1	미정	미정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조 교육시설은 개발(심사)계획의 변경,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 사업지구 인근 학교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계획된 학교(유치원)는 설립계획, 학교개교시기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설립 여부 및 개교 시기가 정해 집니다.
- 공동주택 인근 학교(유치원) 용지가 있다고 해서 신설 학교(유치원) 개교(개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향후 교육부(교육지원청)의 급당 학생 수 정책,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지구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용지는 변경 또는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학교(유치원)설립 계획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등에 따라 조정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 확인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1'로 배치 예정이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배정 정책 및 여건 변화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협의 중으로 교육청의 학생 배정 정책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확인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평준화 지역으로 고등학교 배정은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 및 학군의 경우 학생배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근에 학교가 계획 예정으로 향후 학교 개교 일정에 따라 주출입구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초·중·고등학교는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학교설립 관련 법령·지침 변경, 블록별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규모(세대수),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시기 및 학교설립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기준 적용 주택(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건설, 운송, 가설장비, 레미콘 등)의 파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 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써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 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은행, 인터넷,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4등급)		★
	중량충격음(4등급)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생태면적율	★
		자연지반 녹지율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생활환경 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 · 소방 등급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 용
외벽(직접면)	적 용
외벽(간접면)	적 용
창호(직접면)	적 용
창호(간접면)	적 용
지붕	적 용
바닥(직접면)	적 용

구 분	적용 여부
바닥(간접면)	적 용
바닥(층간바닥)	적 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 용
생활정보기	적 용
고효율LED	적 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 용
절수설비	적 용
고효율설비	적 용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33,419,950
			기간이자	4,908,451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122,207
			계	138,450,607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9,114,731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644,006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8,950
			도로포장공사	263,13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30,983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6,580,029
			부대시설공사	214,292
			계	16,856,131
		건축	공통가설공사	2,675,161
			가시설물공사	6,592,041
			지정 및 기초공사	183,178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32,211,479
			용접공사	-
			조적공사	3,945,869
			미장공사	3,967,909
			단열공사	4,408,508
			방수·방습공사	2,980,257
			목공사	5,101,507
			가구공사	582,921
			금속공사	924,613
			지붕 및 홈통공사	245,942
			창호공사	6,516,818
			유리공사	1,178,111
			타일공사	2,769,103
			돌공사	4,777,896
			도장공사	2,422,722
			도배공사	1,112,897
			수장공사	1,337,650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1,225,267
			계	85,159,848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411,360
			급탕설비공사	914,449
			오배수설비공사	5,992,595
			위생기구설비공사	2,993,374
			난방설비공사	4,016,981
			가스설비공사	1,125,688
			자동제어설비공사	1,019
			특수설비공사	62,670
			공조설비공사	4,417,312
			계	20,935,448

구 분				총 액
건축비	공사비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9,623,335
			정보통신공사	5,112,054
			소방설비공사	12,520,901
			승강기공사	2,724,301
			계	29,980,59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6,130,587
			이윤	11,282,142
			계	17,412,729
	간접비		설계비	2,215,061
			감리비	1,563,437
			일반분양시설 경비	299,108
			분담금 및 부담금	1,207,658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5,997,921
			계	11,283,185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46,255,111
합계				366,333,650

■ (택지비 감정평가시 추가)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동인감정평가법인	나. 현대감정평가법인
141,754,410천원	142,415,270천원	141,093,550천원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5,215,071
	기타비용		129,841
	계		5,344,912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2,327,720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1,379,632
	바닥충격음저감주택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4,468,669
		에어컨냉매배관	965,937
		초고속통신특등급	648,041
		기계환기설비	1,275,566
	친환경주택건설비용		3,179,479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146,397
		기타비용	622,311
	지하주차장층고증가추가비용		236,228
	설계비		294,160
	감리비		7,917,456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8,105,743
		암석지반공사비	-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7,001,452
		지하공사특수공법	-
	안전관리비		920,562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9,654,849
	계		49,144,202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계양 A-6BL	한국토지주택공사 (131-82-13727)	㈜케이알산업(126-81-05325) 우암건설(주)(211-88-51844)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10.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인천계양 A6블록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4-5,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주택전시관 관람기간, 현장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해당기간 중 공휴일 개관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GY-center6.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인천계양 주택전시관 : 032-562-4777 (평일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LH 인 천 지 역 본 부